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<목 차>

1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국토교통부	작성 자	이름	김종욱
	담당부서 (과)	대중교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김상도		연락처	044-201-3826
	과장	김동준		이메일	kjunim0729@korea.kr

종합교통정책관

김상도

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		
	2.규제조문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		
	3.위임법령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(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)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19.6.12. ~ 2019.7.22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범죄 예방 및 사고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		
	7.규제내용	①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지침 마련		
	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, 운수종사자, 승객		
	9.규제목표	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관리 지침 규정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,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충실히 운영·관리하도록 유도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(자동입력)	(자동입력)	(자동입력)
기타	11.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적용제외(7호)		
	12.일물설정 여부	(자동입력)		
기타	13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(자동입력)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 (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)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이란 제3조제1호 각목의 사업 및 제2호가목의 사업을 말한다. ② 법 제27조의3제2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 1. 해당 사업용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.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. 사업용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③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

현 행	개 정 안
	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.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.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.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6.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.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8.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9.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0.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

현 행	개 정 안
	설치 및 갱신 11.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2.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(법률 제15781호 2018.9.18. 공포 2019.9.19. 시행)
- '19.9.19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, 교통사고 상황 파악,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
- 법 제27조의3 제7항에 의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할 필요
-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,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충실히 운영·관리하도록 유도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(현행유지안)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지침 마련과 관련 된 기준이 없음
- (규제대안1)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,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충실히 운영·관리하도록 유도 가능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	입법예고시 의견반영	

3. 규제목표

-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,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충실히 운영·관리하도록 유도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,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충실히 운영·관리하도록 유도할 필요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없음

① 규제 영역	운영관리
② 규제 방식	기준규제
③ 예비분석모델	정성모델
판단 근거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(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)에서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
④ 대상 업종	여객자동차 운송사업
⑤ 예비분석내용	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- 전국에 약 4천여개의 버스운송사업자, 약 16만개의 택시운송사업자(개인택시사업자 포함)가 있으며 운송사업 종류별로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. 이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,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② 유사사례 분석 -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에서 철도운영자가 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도시철도법 제41조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 중 ③ 차등화 대상 결정 - 영상기록장치 설치·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영상기록장치를 충실히 운영·관리토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,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·취지를 고려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
⑥ 차등화적용 여부	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로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해당없음
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

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<영국>

런던의 시내버스는 스피드 돔 카메라를 내부 감시용으로 전면과 중간 그리고 후면에 3대, 전면과 후면 주시용 2대 그리고 측면 감시용 2대를 설치하고 있어 총 7대를 장착·운영 중이며 이층 버스의 경우 2층 내부 감시용 2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9대의 카메라가 장착·운영되고 있음

<스웨덴>

당초 정부기관이나 군부대 등 특수시설 위주로만 설치됐던 보안감시시스템(CCTV)이 1998년과 2013년 두 차례 걸친 법 개정 이후 학교, 법정,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, 은행, 주차장, ATM, 일반 매장으로까지 확대

○ 타법사례

영상기록장치 설치·관리 지침 마련 등 영상기록장치 운영과 관련하여 「철도안전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동일·유사내용 규정 중

<철도안전법 시행령>

철도안전법 제39조의3(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)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,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

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,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-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,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(음성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2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3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⑤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⑥ 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·제공 등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야 한다.
-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철도안전법시행령 제30조(영상기록장치 설치차량) 법 제39조의3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”란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를 말한다.

철도안전법시행령 제31조(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)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운전실 출입문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
2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,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
3.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,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
4.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철도안전법시행령 제32조(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관리 지침)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2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3.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
4.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5. 철도운영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
6.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7.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8.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
9.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
10.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
11.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
12.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<도시철도법 관련 법령>

도시철도법 제41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운영)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
④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3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⑤ 도시철도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도시철도법시행령 제25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)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
2.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
3.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

도시철도법시행령 제26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)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.

1. 설치 목적
2. 설치 장소
3. 촬영 범위
4. 촬영 시간
5. 담당 부서, 책임자 및 연락처
6.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.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를 통해 영상기록장치 운영·관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송사업자들의 운영·관리 지침 마련 관련 의무에 대한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
- 또한 기존에 철도안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 관련 사업자들이 영상기록장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으로 운송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할 경우 관련 의무에 대한 이행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,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충실히 운영·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차등화 적용 곤란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여객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정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, 현재 관할관청과 조합이 상·하반기마다 합동으로 정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영상기록장치 운영·관리 지침 마련 여부에 대한 점검도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영상기록장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방법 등 내용을 구체화

2. 향후 평가계획

- 지자체·버스연합회 협업 등을 통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 지침 마련 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,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(지자체)

3. 종합결론

-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운수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지침 마련 의무를 부과
- 이를 통해, 운수종사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충실히 운영·관리하도록 유도하고,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, 범죄 수사, 법원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사고·범죄 예방 등 효과 확보 가능

별첨
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19	2019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>

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☐ 직접비용

(정성)세분류	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
활동제목	영상기록장치 설치
비용항목	설비
일시적/반복적	일시적
분석	영상기록장치의 해상도와 영상채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고 각 사업자별로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버스대수의 차이가 있어 평균적으로 운수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분석하기는 곤란 *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(원) = 영상기록장치 구매비용(원) × 피규제자 수(버스대수)
근거설명	☐ 규제 강화로 인한 단가 상승 여부 ○ 영상기록장치 구매 설치비용 약 40만원~120만원 일시적 소요 - 화소와 영상채널 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크나 설치하더라도 추가로 영상기록장치 단가 상승비용은 없음 ○ 영상기록장치 운영비용 각 버스 당 약 1만원(월별) *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추산 ☐ 피규제자 수 추정 ○ 현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노선버스는 100%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치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 -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외에 운행 중 대폐차되어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산정이 곤란 * 현재 전국 노선버스 업체수는 895개로 이중 시내버스 약 36,200대, 시외버스 약 6,900대 운영 중

	○ 전세버스 업체수는 1,831개,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42,530대 - 이중 영상기록장치 설치 예정인 전세버스는 약 24,000대(60%)로 추정하고 있으며, 업체 평균 약 24대 전세버스 보유 *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공 - 전세버스 업체 보유 버스 수, 영상기록장치 기존 설치 유무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지므로 평균적으로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분석하기 곤란
--	--

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☐ 편익

(정성)세분류	일반국민
활동제목	영상기록장치 설치
편익항목	범죄예방, 안전사고 현황파악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분석	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현황파악
근거설명	☐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로 대형사고 등을 방지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편익 발생 ○ 다만, 일반국민의 편익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, ○ 현재 시내·시외버스의 경우 영상기록장치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전세버스의 경우 노선버스에 비해 설치율이 낮아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된 일반국민의 편익에 대해 구체적 파악이 어려움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<목 차>

1.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국토교통부	작성 자	이름	김종욱
	담당부서 (과)	대중교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김상도		연락처	044-201-3826
	과장	김동준		이메일	kjunim0729@korea.kr

종합교통정책관

김상도

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		
	2.규제조문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		
	3.위임법령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(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)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'19.6.12 ~ 7.22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범죄 예방 및 사고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		
	7.규제내용	①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		
	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		
	9.규제목표	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·관리의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준수율을 높이고 범죄 예방 및 사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유도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(자동입력)	(자동입력)	(자동입력)
기타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적용제외(7호)		
	12. 일 몰 설 정 여부	(자동입력)		
기타	13.원 칙 허 용 · 예 외 금 지 규 제 방 식 적용여부	(자동입력)		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<신설>	[별표 3] 사업면허취소·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(제43조제1항 관련) 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내용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<th colspan="3">처분내용</th></tr><tr><th>1 차 위반</th><th>2 차 위반</th><th>3 차 이상 위반</th></tr><tr><td>28의2. 법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85조제1항 제23의2호,</td><td>사업 일부 정지 (10 일)</td><td>사업 일부 정지 (20 일)</td><td>사업 일부 정지 (30 일)</td></tr><tr><td>28의3. 법 제27조의3 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85조제1항 제23의3호,</td><td>사업 일부 정지 (10 일)</td><td>사업 일부 정지 (20 일)</td><td>사업 일부 정지 (30 일)</td></tr></table>	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처분내용			1 차 위반	2 차 위반	3 차 이상 위반	28의2. 법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85조제1항 제23의2호,	사업 일부 정지 (10 일)	사업 일부 정지 (20 일)	사업 일부 정지 (30 일)	28의3. 법 제27조의3 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85조제1항 제23의3호,	사업 일부 정지 (10 일)	사업 일부 정지 (20 일)	사업 일부 정지 (30 일)
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		처분내용															
		1 차 위반	2 차 위반	3 차 이상 위반															
28의2. 법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85조제1항 제23의2호,	사업 일부 정지 (10 일)	사업 일부 정지 (20 일)	사업 일부 정지 (30 일)															
28의3. 법 제27조의3 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85조제1항 제23의3호,	사업 일부 정지 (10 일)	사업 일부 정지 (20 일)	사업 일부 정지 (30 일)															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(법률 제15781호 2018.9.18.공포 2019.9.19.시행)
- '19.9.19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, 교통사고 상황 파악,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
-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·관리의무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준수율을 높이고, 범죄 예방 및 사고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유도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(현행유지안) 영상기록장치 설치·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없음
- (규제대안1) 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「별표3」에 처분근거 마련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	입법예고시 의견반영	

3. 규제목표

- 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「별표3」에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유도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여객자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·안전사고 원인 규명 등 명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, 교통사고 상황 등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·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 시 처분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없음

① 규제 영역	운영관리
② 규제 방식	기준규제
③ 예비분석모델	정성모델
판단 근거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(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)에서 운송사업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
④ 대상 업종	여객자동차 운송사업
⑤ 예비분석내용	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- 전국에 약 4천여개의 버스운송사업자, 약 16만개의 택시 운송사업자(개인택시사업자 포함)가 있으며 운송사업 종류별로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. 이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,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 ② 유사사례 분석 - 교통안전법 제55조에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 중이며, 관련 내용 위반시 동법 시행령 「별표9」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규정 준수를 유도 중 - 영상기록장치 설치·운영 관련 규정도 실효성 확보 및 사업자의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처분기준 마련 필요 ③ 차등화 대상 결정 -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·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가 부족
⑥ 차등화적용 여부	범죄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규제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해당없음
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

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<영국>

런던의 시내버스는 스피드 돔 카메라를 내부 감시용으로 전면과 중간 그리고 후면에 3대, 전면과 후면 주시용 2대 그리고 측면 감시용 2대를 포함해 총 7대를 장착하여 운영 중이며 이층 버스의 경우 2층 내부 감시용 2대를 더 포함해 총 9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운영

<스웨덴>

당초 정부기관이나 군부대 등 특수시설 위주로만 설치됐던 보안감시시스템(CCTV)이 1998년과 2013년 두 차례 걸친 법 개정 이후 학교, 법정,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, 은행, 주차장, ATM, 일반 매장으로까지 설치 확대

o 타법사례

영상기록장치와 성격이 유사한 운행기록장치와 관련하여 장착 의무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

<교통안전법 시행령 [별표9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9조 관련)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13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3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14.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10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15.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	100만원		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여객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,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후 상황 파악 등 사업자 입장에서든 편익이 크므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로 업체규모별로 해당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여객법에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여객법령에 따라 자동차 정비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, 현재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상·하반기마다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관리감독 가능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비용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

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을 구체화

2. 향후 평가계획

- 지자체 및 버스연합회와 협력 등을 통해 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

3. 종합결론

-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·관리의무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준수율을 높이고, 범죄 예방 및 사고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유도

별첨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		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>